경희궁 에피트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견본주택에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303-228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11.1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026.11.13.(금)	2026.11.25.(수)	2026.11.26.(목)	2026.11.27.(금)	2026.11.30.(월)	2026.12.04.(금)	2026.12.09.(수)~ 2026.12.13.(일)	2026.12.16.(수)~ 2026.12.18.(금)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으로서, 「주택법」제 15조에 따라 공급받은 최초 계약자(수분양자)는 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최초 공급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를 득해야 합니다. 당 사업지가 위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래 대상의 토지면적(대지지분)이 15㎡ 초과일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본 아파트의 일부주택형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소유권 행사(전매, 매매, 의무거주기간, 주택처분 등)에 제한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정부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brand.hldni.com/gyeonghuigung/)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13.(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2024.11.1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 정	2026.11.25.(수)	2026.11.26.(목)	2026.11.27.(금)	2026.11.30.(월)	2026.12.04.(금)	2026.12.09.(수)~ 2026.12.13.(일)	2026.12.16.(수)~ 2026.12.18.(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23-6)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

※ (예외1)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외2) 2025.03.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신청자 본인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본인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당첨 가능합니다(혼인특례 사용하여 청약신청).

※ (예외3)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본 아파트의 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신고관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를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신고서 제출을 진행하며,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므로, 계약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본인의 입주 여부 및 입주 예정 시기 등을 기재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으로 이미 신고한 거래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

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신고 또는 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개발과 - 17144호(2026.11.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2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21층 3개동 총 228세대(토지등소유자 10세대, 보류지 5세대, 임대 78세대, 기타1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134세대 [특별공급 72세대(기관추천 13세대, 다자녀가구 13세대, 신혼부부 20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9세대, 신생아 1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30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000505	01	039.9342	39	39.9342	14.3019	54.2361	31.9086	86.1447	7.0882	5	-	-	-	-	-	-	-	5	-
	02	059.9926	59	59.9926	18.3791	78.3717	47.9359	126.3076	10.6485	31	5	3	5	1	1	3	18	13	-
	03	084.9794A	84A	84.9794	26.3776	111.3570	67.9011	179.2581	15.0836	53	4	5	8	2	4	5	28	25	4
	04	084.9940B	84B	84.9940	25.9944	110.9884	67.9128	178.9012	15.0862	45	4	5	7	1	4	5	26	19	-
	합 계									**134**	**13**	**13**	**20**	**4**	**9**	**13**	**72**	**62**	**4**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59	84A	84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1	**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1	**2**
	장애인 서울특별시	1	1	1	**3**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3**
	소계	**5**	**4**	**4**	**1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50%)	2	3	3	**8**
	서울특별시 2년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	2	2	**5**
	소계	**3**	**5**	**5**	**13**
신혼부부 특별공급		5	8	7	**2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2	1	**4**
생애최초 특별공급	1	4	4	**9**
신생아 특별공급	3	5	5	**13**
합 계	**18**	**28**	**26**	**7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원)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타입)	공급 세대 수	동호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 후 15일 이내	2027.05.10.	2027.12.10.	2028.07.10.	2029.04.10.	2029.09.10.	2030.02.11.	입주시
039.9342	39	5	102동 6호	6-10층	1	686,654,804	471,865,196	1,158,520,000	50,000,000	65,852,000	115,852,000	115,852,000	115,852,000	115,852,000	115,852,000	115,852,000	347,556,000
				11-15층	3	693,731,642	476,728,358	1,170,460,000	50,000,000	67,046,000	117,046,000	117,046,000	117,046,000	117,046,000	117,046,000	117,046,000	351,138,000
				16-21층	1	700,814,407	481,595,593	1,182,410,000	50,000,000	68,241,000	118,241,000	118,241,000	118,241,000	118,241,000	118,241,000	118,241,000	354,723,000
059.9926	59	31	101동 3호 102동 3호	4층	2	1,084,285,380	745,114,620	1,829,400,000	50,000,000	132,940,000	182,940,000	182,940,000	182,940,000	182,940,000	182,940,000	182,940,000	548,820,000
				5층	1	1,094,515,382	752,144,618	1,846,660,000	50,000,000	134,666,000	184,666,000	184,666,000	184,666,000	184,666,000	184,666,000	184,666,000	553,998,000
				6-10층	5	1,104,745,384	759,174,616	1,863,920,000	50,000,000	136,392,000	186,392,000	186,392,000	186,392,000	186,392,000	186,392,000	186,392,000	559,176,000
				11-15층	7	1,114,975,386	766,204,614	1,881,180,000	50,000,000	138,118,000	188,118,000	188,118,000	188,118,000	188,118,000	188,118,000	188,118,000	564,354,000
				16-21층	7	1,125,199,461	773,230,539	1,898,430,000	50,000,000	139,843,000	189,843,000	189,843,000	189,843,000	189,843,000	189,843,000	189,843,000	569,529,000
			101동 6호	6-10층	2	1,074,055,378	738,084,622	1,812,140,000	50,000,000	131,214,000	181,214,000	181,214,000	181,214,000	181,214,000	181,214,000	181,214,000	543,642,000
				11-15층	4	1,084,285,380	745,114,620	1,829,400,000	50,000,000	132,940,000	182,940,000	182,940,000	182,940,000	182,940,000	182,940,000	182,940,000	548,820,000
				16-21층	3	1,094,515,382	752,144,618	1,846,660,000	50,000,000	134,666,000	184,666,000	184,666,000	184,666,000	184,666,000	184,666,000	184,666,000	553,998,000
084.9794A	84A	53	101동 4호 102동 4호	3층	2	1,453,436,721	998,793,279	2,452,230,000	50,000,000	195,223,000	245,223,000	245,223,000	245,223,000	245,223,000	245,223,000	245,223,000	735,669,000
				4층	1	1,467,969,725	1,008,780,275	2,476,750,000	50,000,000	197,675,000	247,675,000	247,675,000	247,675,000	247,675,000	247,675,000	247,675,000	743,025,000
				5층	1	1,482,508,656	1,018,771,344	2,501,280,000	50,000,000	200,128,000	250,128,000	250,128,000	250,128,000	250,128,000	250,128,000	250,128,000	750,384,000
				6-10층	7	1,497,041,660	1,028,758,340	2,525,800,000	50,000,000	202,580,000	252,580,000	252,580,000	252,580,000	252,580,000	252,580,000	252,580,000	757,740,000
				11-15층	6	1,511,574,664	1,038,745,336	2,550,320,000	50,000,000	205,032,000	255,032,000	255,032,000	255,032,000	255,032,000	255,032,000	255,032,000	765,096,000
				16-21층	7	1,526,107,668	1,048,732,332	2,574,840,000	50,000,000	207,484,000	257,484,000	257,484,000	257,484,000	257,484,000	257,484,000	257,484,000	772,452,000
			101동 5호 102동 5호	3층	2	1,409,831,782	968,828,218	2,378,660,000	50,000,000	187,866,000	237,866,000	237,866,000	237,866,000	237,866,000	237,866,000	237,866,000	713,598,000
				4층	2	1,424,370,713	978,819,287	2,403,190,000	50,000,000	190,319,000	240,319,000	240,319,000	240,319,000	240,319,000	240,319,000	240,319,000	720,957,000
				5층	2	1,438,903,717	988,806,283	2,427,710,000	50,000,000	192,771,000	242,771,000	242,771,000	242,771,000	242,771,000	242,771,000	242,771,000	728,313,000
				6-10층	7	1,453,436,721	998,793,279	2,452,230,000	50,000,000	195,223,000	245,223,000	245,223,000	245,223,000	245,223,000	245,223,000	245,223,000	735,669,000
				11-15층	7	1,467,969,725	1,008,780,275	2,476,750,000	50,000,000	197,675,000	247,675,000	247,675,000	247,675,000	247,675,000	247,675,000	247,675,000	743,025,000
				16-21층	9	1,482,508,656	1,018,771,344	2,501,280,000	50,000,000	200,128,000	250,128,000	250,128,000	250,128,000	250,128,000	250,128,000	250,128,000	750,384,000
084.9940B	84B	45	101동 2호 102동 2호	4층	2	1,434,138,409	985,531,591	2,419,670,000	50,000,000	191,967,000	241,967,000	241,967,000	241,967,000	241,967,000	241,967,000	241,967,000	725,901,000
				5층	2	1,448,623,997	995,486,003	2,444,110,000	50,000,000	194,411,000	244,411,000	244,411,000	244,411,000	244,411,000	244,411,000	244,411,000	733,233,000
				6-10층	5	1,463,115,512	1,005,444,488	2,468,560,000	50,000,000	196,856,000	246,856,000	246,856,000	246,856,000	246,856,000	246,856,000	246,856,000	740,568,000
				11-15층	7	1,477,601,100	1,015,398,900	2,493,000,000	50,000,000	199,300,000	249,300,000	249,300,000	249,300,000	249,300,000	249,300,000	249,300,000	747,900,000

				16-21층	9	1,492,086,688	1,025,353,312	2,517,440,000	50,000,000	201,744,000	251,744,000	251,744,000	251,744,000	251,744,000	251,744,000	251,744,000	755,232,000
			101동 1호 102동 1호	4층	1	1,390,681,645	955,668,355	2,346,350,000	50,000,000	184,635,000	234,635,000	234,635,000	234,635,000	234,635,000	234,635,000	234,635,000	703,905,000
				6-10층	7	1,419,652,821	975,577,179	2,395,230,000	50,000,000	189,523,000	239,523,000	239,523,000	239,523,000	239,523,000	239,523,000	239,523,000	718,569,000
				11-15층	6	1,434,138,409	985,531,591	2,419,670,000	50,000,000	191,967,000	241,967,000	241,967,000	241,967,000	241,967,000	241,967,000	241,967,000	725,901,000
				16-21층	6	1,448,623,997	995,486,003	2,444,110,000	50,000,000	194,411,000	244,411,000	244,411,000	244,411,000	244,411,000	244,411,000	244,411,000	733,233,000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td></tr>
</table>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3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50%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단, 우선공급 물량에서 경쟁 발생 시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우선공급 낙첨자는 잔여물량 50%에서 재경쟁하며, 이 경우 지역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배점
<table>
<tr><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준</th><th>점수</th></tr>
<tr><td>계</td><td>100</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3명</td><td>35</td></tr>
<tr><td>2명</td><td>25</td></tr>
<tr><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2명</td><td>10</td></tr>
<tr><td>1명</td><td>5</td></tr>
<tr><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
<tr><td>한부모 가족</td><td>5</td><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
<tr><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
<tr><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td rowspan="3">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0</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5</td></tr>
<tr><td>입주자저축가입기간(6)</td><td>5</td><td>10년 이상</td><td>5</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able>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td></tr>
</table>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20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td>3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
<tr><th>순위</th><th>내용</th></tr>
<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
</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td></tr>
</table>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1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table>
<tr><td></td><td>-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 rowspan="2">3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td></tr>
</table>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1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d></td><td></td><td></td><td>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
</td></tr>
<tr><td></td><td></td><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1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 - 세대주일 것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규제지역 1순위 청약 불가)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70%	3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2.04.(금) ~ 2026.12.13.(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2.04.(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서류 제출 장소	비고
당첨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6.12.09.(수) ~ 2026.12.13.(일) 10:00 ~17:00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23-6)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자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 및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을 통해 사전방문 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홈페이지(https://brand.hldni.com/gyeonghuigung/)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 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예비순번 순 등으로 서류접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제출일정,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견본주택을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https://brand.hldni.com/gyeonghuigung/)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제출하여야 하 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제출하여야 합니다.(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 약 진행 불가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잘못된 정보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명 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서류 미제출 시 계약 포기로 간주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호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 / 공통 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전자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인정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 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 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등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 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및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연간 183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가점제 청약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본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18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본인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출생증명서)	또는 배우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 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월평균 소득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현재 배우자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 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아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 가점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생애최초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월평균 소득 확인)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본인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증빙서류] 참조 *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되었을 시 소득금액증명의 총 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가능 *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 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 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아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신생아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월평균 소득 확인)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진단서 등)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 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 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견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아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아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초본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1년 이상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과세대장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전자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인정
	○		인감도장		공급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		위임장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 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3.]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이직)자	①재직증명서 ②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재직증명서(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②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사업자등록증명 ②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전년도 재무재표원본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직인날인) ③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④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

신규사업자 (소득입증서류 제출 불가자)	①사업자등록증명 ②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신고분만 인정)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 날인) ②위촉(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 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주민센터
일용근로소득자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②위촉(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해당 직장 ② 해당직장
무직자 (만19세이상)	①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위촉증명서, 해촉증명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명이 가능한 서류제출로 소득기간을 산정)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 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주택의 경우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주택 공시가격 ※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①②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④위택스
		▶주택외의 집합건물의 경우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과 ※발급방법: 이택스(서울) 이용안내 > 조회, 발급 >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위택스(서울 외)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과 ※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시가 확인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내역"을 발급받아 건물시가를 확인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①②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이택스, 위택스 ④위택스 ⑤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토지의 경우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개별 공시지가 ※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①②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④위택스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①행정복지센터 ②지자체축산과 ③토지이음(www.eum.go.kr) ④위택스
부동산	본인 및	① 부동산소유현황	①대법원인터넷등기소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세대원 전원	※발급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발급방법: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②위택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및납부내역증명서와납세증명서(종합소득세납부자) (결정세액이 환급이나 '0'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①②③ 해당직장/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장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2026.12.16.(수) ~ 2026.12.18.(금) 10:00 ~17:00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23-6)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안내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후 경쟁 미달시에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제출서류는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사항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사전서류 미접수 시 필수서류 구비)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계약자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전자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 재정경제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상기 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방법		
과세 대상		**① 아파트 공급 계약서 ② 발코니 확장 계약서** **※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가전 옵션 계약서 또한 도급증서로 인지세 과세 대상이며 플러스 옵션과 가전 옵션 계약일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납부 기한		**[경희궁 에피트] : 계약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전매] : 명의변경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방법	방문	**우체국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인지세 납부(방문 전 구매 가능 여부 확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재정경제부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 구입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출력 전 테스트 인쇄 필수)**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비고
납부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상기 과세 대상에 따라 구매
	사업주체(시공사)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 가전 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시행위탁자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 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전매의 경우 최초 공급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최초 공급계약서(추가 옵션 계약서 포함), 법령에서 전매 가능한 경우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 할 때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인쇄 오류 시 재발행 불가,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 납부 및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중「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씩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304-916582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 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 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신탁사, 시행사 분 상이)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서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사전검수(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능하며,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재당첨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처리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에 따른 계약취소** 1.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이자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10%(1차, 2차 계약금)를 완납한 계약자에 한해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출 조건은 중도금 이자후불제로, 총 공급대금의 60% 중 총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대출 알선이 가능하며 나머지 총 공급대금의 20%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자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관한 세부내용(대출취급기관, 금리, 대출 실행 일정 등)은 향후 대출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견본주택을 통해 별도로 공지 및 안내할 예정입니다. 시행위탁자가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은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 목적이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대출 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입니다.
- 본 주택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법률 변경, 정부의 부동산·금융 정책(규제지역 지정, LTV/DTI 축소, 대출한도 및 건수 제한 등), 집단대출 보증기관(HUG, HF 등)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개정,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대출 조건 및 한도가 제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은 규제지역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며, 다주택자·법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등은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신용상태, 주택 소유 여부, 기존 대출 유무, 금융신용불량 거래 등 계약자 본인의 귀책 및 개인 사유로 인하여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분양사무소 및 분양상담사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 전화 상담 포함 시 안내된 대출 가능 여부는 확정 사항이 아니며 추후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정부 정책 변경, 대출한도 축소, 대출 불가, 대출 미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자는 사업주체, 시행위탁자, 시공사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 불가하거나 한도가 부족한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 일정에 맞춰 본인 책임하에 직접 납부(자납)하여야 하며, 별도의 납부안내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납부 지연 시 분양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부과 및 계약 해제(위약금 발생)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적격 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분양계약 체결 후 대출취급기관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약정 체결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및 계약사항 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대출취급기관 간 계약 관리 및 일정 통보, 적격 심사를 목적으로 제공·활용되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의 약정 기간은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입니다. 중도금 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발생으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 중단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미납금을 조달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 변경에 대해 계약자는 별도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자가 직접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 원금 상환(또는 담보대출 전환) 및 대납이자 등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담보대출 전환 시에는 공급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담보대출 조건(한도, 금리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릅니다. 근저당 설정비, 보증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주체가 부담합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해제될 경우, 계약자는 계약서상 위약금과 별도로 시행위탁자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즉시 반환·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납부하던 대출 이자를 계약자가 직접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및 변동성 등으로 인해 대출취급기관이 제2금융권으로 선정되거나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분양계약서 약관에 따릅니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약식표기	확장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8.07.10.	잔금80% 입주지정일	비고
39	15,000,000	**1,500,000**	**1,500,000**	**12,000,000**	-
59	25,000,000	**2,500,000**	**2,500,000**	**20,000,000**	-
84A	35,000,000	**3,500,000**	**3,500,000**	**28,000,000**	-
84B	35,000,000	**3,500,000**	**3,500,000**	**28,000,000**	-

2)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6-801-580447	한국투자부동산신탁㈜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결로방지를 위해서 해당세대 천장 속에 단열재가 시공되며, 단열 두께에 따른 발코니 부분의 천장 층고가 낮아질 수 있으며, 거실 등 박스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 후 천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위치에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단, 옵션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을 선택시, 설치구간은 천장마감이 낮아지며 에어컨이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우·오수 드레인 및 선홈통 등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발코니에 수전, 콘센트가 설치되며, 설치 개소와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고, 배수구 위치, 배수 및 우수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스타일 특화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39	59	84A	84B	비고
거실 스타일업 특화	선택1	거실전면 유럽산세라믹타일	1,800,000	1,900,000	2,250,000	2,000,000	- 미 선택시: 벽면 기본형 타일 설치
	선택2	거실후면(소파면) 유럽산세라믹타일+픽처레일	-	2,800,000	2,400,000	3,700,000	- 미 선택시: 벽면 벽지 마감, 픽쳐레일 미설치
	선택3	시트판넬 : 복도벽, 주방벽(일부평형)	750,000	800,000	1,300,000	1,550,000	- 미 선택시: 벽면 벽지 마감 -주방벽시트판넬:84A수납특화(침실3)미선택시적용,84B제외
	선택4	39타입 알파룸 분리형 : 벽체+목문+거실벽(세라믹타일+픽쳐레일)	3,300,000	-	-	-	- 미 선택시: 거실과 알파룸 통합(벽체+목문 삭제), 거실벽 기본벽지 마감
	선택5	조명스타일업(거실D/L(3"), 거실간접등(등박스포함), 커튼박스 간접등, 복도D/L(2")), 신발장하부간접등	1,850,000	1,900,000	2,550,000	2,450,000	- 미 선택시 거실 단천장 기본설치(간접등박스 삭제) / 기본형 조명 설치 -디밍기능:거실D/L
	선택6	조명스타일업(거실D/L(3"), 거실간접등(등박스포함), 커튼박스 간접등, 복도D/L(2")), 신발장하부간접등	1,400,000	-	-	-	- 39타입 알파룸 특화 선택시, 선택 가능 -미선택시거실단천장기본설치(간접등박스 삭제) / 기본형 조명 설치 -디밍기능:거실D/L
주방 스타일업 특화	선택1	해커수입가구+주방벽/상판 세라믹타일+터치식수전+저소음후드 +조명스타일업(주방사각라인등, 식탁D/L(2"), 아일랜드D/L(2"))	32,800,000	-	-	-	- 미 선택시 : 벽타일(300X600)+상판(엔진)+일반싱크볼+기본수전+일반후드+국산주방가구 + 기본형 조명 설치
	선택2	해커수입가구+주방벽/상판 세라믹타일+터치식수전+저소음후드 +조명스타일업(주방사각라인등)	-	35,800,000	-	-	- 미 선택시 : 벽타일(300X600)+상판(엔진)+일반싱크볼+기본수전+일반후드+국산주방가구 + 기본형 조명 설치
	선택3	해커수입가구+주방벽/상판 세라믹타일+터치식수전+저소음후드	-	-	42,800,000	-	- 미 선택시 : 벽타일(300X600)+상판(엔진)+일반싱크볼+기본수전+일반후드+국산주방가구
	선택4	조명스타일업(주방사각라인등, 주방간접등(우물천장+간접등박스포함), 아일랜드D/L(2"), 식탁D/L(3"))	-	-	1,400,000	-	- 수납특화 선택1 **미선택시**, 선택가능 - 미선택 시 : 우물천장+간접등박스 삭제 / 기본형 조명 설치
	선택5	조명스타일업(주방사각라인등, 주방간접등(우물천장+간접등박스포함), 아일랜드D/L(2"), 식탁D/L(3"))	-	-	1,550,000	-	- 수납특화 선택1 **선택시**, 선택가능 - 미선택 시 : 우물천장+간접등박스 삭제 / 기본형 조명 설치
	선택6	해커수입가구+주방벽/상판 세라믹타일+터치식수전+저소음후드 +조명스타일업(주방사각라인등, 식탁D/L(2"), 아일랜드D/L(2"))	-	-	-	41,500,000	- 미 선택시 : 벽타일(300X600)+상판(엔진)+일반싱크볼+기본수전+일반후드+국산주방가구 + 기본형 조명 설치
수납 특화	선택1	주방/침실3 통합형 : 주방장식장+주방팬트리(가구도어+시스템선반)+현관	-	-	3,500,000	-	- 미 선택시 : 침실3(목문+침실), 현관팬트리 시스템선반 축소

		팬트리 확대					
	선택2	침실2 팬트리(건식벽체+가구도어+시스템선반)	-	-	600,000	-	- 미 선택시 : 침실2 팬트리 삭제
	선택3	다용도실 시스템선반	210,000	-	-	-	- 미 선택시 : 시스템선반 삭제
붙박이장 특화	**선택1**	침실1 붙박이장+입식화장대+서랍장+조명스타일업(화장대 D/L(2"))	-	-	5,250,000	-	- 미 선택시: 좌식화장대+드레스룸(가구도어+시스템선반) 기본설치, 기본형 조명 설치
	선택2	침실 붙박이장	1,700,000	-	-	-	- 미 선택시: 가구 미설치
	선택3	침실2 붙박이장	-	1,550,000	1,550,000	1,300,000	- 미 선택시: 가구 미설치 - 선택3, 4 각각 선택가능 - 84A 수납특화 옵션 선택시 침실3붙박이장 선택불가 - 선택시 침실규격 일부 축소됨
	선택4	침실3 붙박이장	-	1,400,000	1,100,000	1,300,000	
욕실 스타일업 특화	**선택1**	유럽산포세린타일(벽, 바닥)+조명스타일업(욕실장하부간접등)	-	3,100,000	3,100,000	3,100,000	- 미 선택시 기본타일(벽/바닥), 욕실장하부간접등 삭제 - 욕실장하부간접등은 천장에 설치되는 전용 센서로 동작
바닥재 특화	**선택1**	스톤보드(거실,주방,복도,팬트리)	1,600,000	1,700,000	2,000,000	2,050,000	- 미 선택시: 기본마루 설치 - 침실1,2,3, 드레스룸은 옵션 미적용(재료분리대 목문하부설치)
	선택2	84A : 스톤보드(거실,주방,복도,팬트리) : 수납특화 선택1 적용 시 39 : 알파룸 적용시	1,350,000	-	2,300,000	-	

- 거실 스타일업 특화 옵션(선택4, 선택6) 선택 시, 39A타입에 알파룸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되는 알파룸에 난방은 개별 조절 가능하며 급, 배기 디퓨져가 신설됩니다.
- 주방 스타일업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해커수입가구가 설치될 경우에는 가스배관은 벽체 매립형(매립형 자동식소화기 차단기 포함)으로 설치되며 세부위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업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해커수입가구가 설치될 경우에는 84B타입의 경우 가스배관(자동식소화기 차단기 포함)의 위치가 기본형(옵션 미선택 시)과 상이합니다.
- 수납특화 옵션(선택1) 선택 시, 84A타입의 침실3은 설치되지 않으며, 신설되는 주방 팬트리에 급, 배기 디퓨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난방은 거실(또는 인근실)과 연동되어 운전됩니다.
- 타일 및 석재류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나눔 부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타일 및 석재류 자재 특성에 의한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요철에 의한 줄눈마감, 평활도가 균일하지 않으며, 줄눈의 색상, 규격, 사양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스타일업 선택3 선택 시 84A는 복도벽과 주방식탁벽(수납특화 미적용)에 시트판넬이 설치됩니다.
- 주방 상판에 시공되는 세라믹타일은 생산규격 특성상 이음매가 발생합니다.
- 수납특화 (선택1) 선택 시, 침실3이 미설치됨에 따라 전기 계획이 변경됩니다. (침실3 조명, 통합스위치 삭제 및 콘센트 위치 수량 변경 등)
- 수납특화 (선택1) 미선택 시 84A 주방식탁 공간과 현관팬트리는 축소되고, 주방팬트리와 장식장은 삭제되며, 침실3(목문+침실형)이 설치됩니다.
- 붙박이장 (선택1,2,3,4) 옵션 가구 설치 시 평형별로 가구의 규격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침실 규격이 일부 축소됩니다.
- 붙박이장 (선택3,4)는 각각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옵션에 따라 전기 마감자재(조명, 통합 스위치, 콘센트 등)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 설치시 관련부위 벽지 및 바닥마감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옵션 가구용 조명의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용 조명이 포함된 옵션 품목 미선택 시 해당 조명은 미설치됩니다.
- 옵션 가구에 가구조명 설치 시, 별도의 가구스위치가 설치되며, 옵션 미선택시 가구조명과 스위치는 ㅐ미설치됩니다.
- 옵션 가구가 시공되는 부위의 바닥, 벽, 천장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스타일업 특화 옵션 미선택 시 욕실1(공용욕실)은 가로600x세로300의 벽용 타일, 300x300의 바닥용 타일이 시공되며, 욕실2(부부욕실)은 가로300x세로600의 벽용 타일, 300x300의 바닥용 타일이 시공됩니다.
- 본공사 시 바닥 특화 옵션 타일나누기가 변경되어 조인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마루와 스톤보드 사이에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재료분리대가 변경될 수있고,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리콘의 색상 및 두께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스타일업 특화시 제공되는 해커수입주방가구는 평형별로 형태와 규격이 상이하오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스타일업 특화 미선택 시 주방가구의 기본 마감자재 및 디자인은 견본주택과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닥 특화 옵션은 거실, 주방, 복도, 팬트리만 적용되며, 침실1,2,3(옵션미적용부위), 드레스룸 부위는 선택하실 수 없으며, 기본마루가 시공됩니다.

2) 가전기기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39	59	84A	84B	비고
전기쿡탑(3구 인덕션)	선택1	엘지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 미선택시 3구 가스쿡탑 기본설치
	선택2	삼성	800,000	800,000	800,000	800,000	
전기오븐	선택3	엘지	450,000	450,000	450,000	450,000	- 미선택시 가구수납(도어) - 옵션 선택시에만 해당 용도 콘센트 설치
	선택4	삼성	850,000	850,000	850,000	850,000	
식기세척기	선택5	엘지	-	1,200,000	1,200,000	1,200,000	- 미 선택시 가구수납(도어) - 옵션 선택시에만 해당 용도 콘센트 설치
	선택6	삼성	-	1,400,000	1,400,000	1,400,000	
냉장고SET	선택7	엘지	-	6,850,000	5,700,000	5,700,000	- 미 선택시 냉장고 설치공간 제공 (상부장 기본설치)
	선택8	삼성	-	5,100,000	5,000,000	5,000,000	

• 옵션 가전기기는 품목별로 선택 가능하며, 옵션 선택시에만 해당용도의 콘센트가 추가 설치됩니다.
• 옵션 가전기기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만 설치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냉장고의 종류에 따라 돌출 또는 규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옵션품목 선택시 각 세대별 냉장,냉동,김치의 위치, 개폐방향은 상이할 수 있으며, 도어색상은 해당 업체에서 제시한 색상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추후 옵션계약시 확인가능)
- 엘지 '식기세척기'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제품 전면부에 주방 가구마감과 동일한 색상의 판넬이 부착됩니다.
- 삼성 '식기세척기'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제품 전면부에 가전마감으로 부착됩니다.
• 주방 스타일업 특화 옵션 선택시 냉장고장의 도어마감도 옵션마감(하부장과 동일)으로 변경됩니다.
• 전기쿡탑 옵션 선택시에도 주방에 가스배관 및 밸브가 시공됩니다.(단, 주방상판에 가스호스 관통용 홀은 타공되지 않음)
• 계약자가 개별로 사용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추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은 검사기준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전기설비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39	59	84A	84B	비고
조명 특화	선택1	침실1등	450,000	-	-	-	- 미 선택시 기본형 설치 - 디밍/색온도기능:침실등
	선택2	침실1등 + 알파룸 등	880,000	-	-	-	- 39타입 알파룸 특화 선택시, 선택 가능 - 미선택시기본형설치 - 디밍/색온도기능:침실등,알파룸등

	선택3	침실1,2,3등	-	1,400,000	1,400,000	1,400,000	- 미 선택시 기본형 설치 - 디밍/색온도기능:침실등
	선택4	침실1,2등	-	-	900,000	-	- 주방수납 특화 선택시, 선택 가능 - 미선택시기본형설치 - 디밍/색온도기능:침실등
스마트 라이프	선택1	13인치월패드+안면인식도어카메라+ 지문인식도어락+스마트스위치(욕실1)	950,000	-	-	-	- 미선택시 기본형 설치 (10인치 월패드,일반형 도어카메라, 일반형 도어락, 일반형 스위치(욕실1))
	선택2	13인치월패드+안면인식도어카메라+ 지문인식도어락+스마트스위치(욕실1,욕실2)	-	1,200,000	1,200,000	1,200,000	- 미선택시 기본형 설치 (10인치 월패드,일반형 도어카메라, 일반형 도어락, 일반형 스위치(욕실1,욕실2))
욕실 특화	[아메리칸스탠다드] 비데일체형양변기, 고급형 세면기 및 수전류 (욕실1)		2,500,000	-	-	-	- 미 선택시 기본형 설치
	[아메리칸스탠다드] 비데일체형양변기, 고급형 세면기 및 수전류 (욕실1,2)		-	4,000,000	4,000,000	4,000,000	- 욕실1, 2 일괄선택 - 미 선택시 기본형 설치
욕실 복합 환풍기	[힘펠] 환기+온풍+제습+드라이기능 (욕실1)		700,000	-	-	-	- 미 선택시 기본 욕실휀(배기전용) 설치
	[힘펠] 환기+온풍+제습+드라이기능 (욕실1,2)		-	1,300,000	1,300,000	1,300,000	- 욕실1, 2 일괄선택 - 미 선택시 기본 욕실휀(배기전용) 설치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일반형 (LG)	[선택1] 거실+침실1	4,000,000	4,000,000	4,500,000	4,500,000	- 미 선택시, 기본 냉매 매립배관 2개소 설치 (거실,침실1) - 고급형(LG프리미엄)은 와이드디자인, 6가지 공간 맞춤바람, UV살균, AI건조기능 추가 - 고급형(LG프리미엄)은 레이더센서 적용 모델 아님 (AI바람, AI쾌적수면바람, AI외출절전모드없음) - 일반형과 고급형 옵션은 혼합선택 불가 - 일반형, 고급형 모델 모두 공기청정기능은 없음 ※39타입의 선택4,8은 '거실 스타일업 특화(선택4, 선택6 (알파룸 분리형))' 옵션 선택시만 선택가능 ※84A타입의 선택3,7은 '수납특화' 옵션(선택1) 선택시만 선택가능
		[선택2] 거실+침실1,2,3	-	6,800,000	7,500,000	7,500,000	
		[선택3] 거실+침실1,2	-	-	5,700,000	-	
		[선택4] 거실+침실1+알파룸	5,200,000	-	-	-	
	고급형 (LG)	[선택5] 거실+침실1	4,500,000	4,500,000	5,000,000	5,000,000	
		[선택6] 거실+침실1,2,3	-	7,800,000	8,500,000	8,500,000	
		[선택7] 거실+침실1,2	-	-	6,700,000	-	
		[선택8] 거실+침실1+알파룸	6,200,000	-	-	-	
저소음 레인지 후드	[힘펠] 독립형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 미선택시 기본 침니형 후드 설치
공기청정형 환기 시스템	[경동나비엔] 공기청정형 전열교환기		-	-	1,400,000	1,400,000	- 미 선택시 기본 전열교환기 설치

• 유상옵션 금액은 옵션 미 선택시 설치되는 기본형 제품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39타입은 욕실1개소에 대한 공사비 기준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 사양의 타사모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특화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도기/수전류가 설치되며, 액세서리 및 욕조(공용욕실), 분리형 비데(부부욕실)는 기본 제공됩니다. (단, 39타입에는 욕조 미설치)
- 욕실 복합환풍기 옵션 품목 선택 여부에 따라, 기본형 환풍기와 옵션형 환풍기의 설치 위치는 달라지며, 옵션형 복합환풍기는 무선 리모콘이 제공됩니다. 욕실 복합환풍기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옵션 선택시, 전용차단기(세대분전반 내) 및 회로가 설치되며, 미선택시 전용 차단기 및 회로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옵션제품은 환기, 온풍, 제습, 드라이 기능 및 무드등이 포함되며, 이외의 부가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저소음 레인지 후드 옵션은 날씨 및 층수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소음이 다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저소음 레인지 후드 옵션 선택에 따라, 덕트 및 후드캡이 추가 시공되어 외부 입면의 형태가 변경됩니다.
- 저소음 레인지 후드 작동 시, 배기 성능 향상을 위해 세대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이 연동되어 운전됩니다.
- 저소음 레인지 후드 옵션은 '주방 스타일업 특화' 옵션 일부 선택안에 포함되는 저소음후드 제품과 동일하며, 저소음 후드만 단일 선택 가능하도록 옵션 구분이 되어있으므로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옵션 품목 선택 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에어모니터(이동식)가 제공되며 컨트롤러는 기본형과 다른 모델로 설치됩니다.
-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옵션 품목 선택 시, 덕트 등 필수설비가 발코니(다용도실 포함)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옵션 품목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작동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필터교체
- 스마트라이프 옵션 제품은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터치 아이콘 및 전면부 색상 변경 등이 반영된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6-101-580448	한국투자부동산신탁㈜

구분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납부 일정	**계약시**	2028.07.10.	입주지정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I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1 단지 여건 등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항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 (평형 환산 방법 : 면적(㎡)*0.3025)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변경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세대당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 및 지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단, 정산이 필요한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하며,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목적물은 구조/성능/마감/상품/디자인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므로 이 점 양지하길 바랍니다.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경미한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주동, 근린생활시설, 공용시설에 설치되는 로고의 개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및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 공용시설 등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세대별 공급금액이 상이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일부 시설을 구조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은 불가합니다.
- 학생배치는 향후 주변 개발사업 및 학생발생 추이, 교육부 정책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축물의 색채, 형태(외벽 및 측벽 줄눈, 저층부 및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및 난간 형태 및 색상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 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입니다.
-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 단지 배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조경면적 등), 각종 인쇄물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지지분의 용도별 대지비율 면적은 계약면적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세대별 및 주택형별 대지지분은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고려한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경미한 범위내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 위치 등)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도면에 준하지만, 인·허가 과정 및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입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광고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십시오.
- 분양대상물의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이 삽입된 분양 관련 각종 홍보물(팜플렛, 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VR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도서와 모형, CG 등 분양광고물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시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59, 84A타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59, 84A타입 외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가구의 형태 등은 견본주택 건립타입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 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환경과 부지 내 계획고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의 마감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에는 인허가청에 제출된 마감재리스트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견본주택 내 안방 비확장 발코니에 설치된 바닥마감재 및 가구, 소품 등은 연출용으로 설치된 전시용 제품으로, 본공사시 제공되지 않으며 안방발코니는 물쓰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바닥 배수구 및 타일마감(실외기실 바닥마감과 동일한 바닥타일)이 기본설치됩니다. 또한 발코니는 단열 및 바닥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며, 안방과 발코니 사이에는 본공사시 분합문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가구, 소품 등은 연출용으로 설치된 전시용 제품으로, 본공사시 제공되지 않으며 안방발코니는 물쓰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바닥 배수구 및 타일마감(실외기실 바닥마감과 동일한 바닥타일)이 기본설치됩니다. 또한 안방 발코니는 단열 및 바닥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며, 안방과 발코니 사이에는 본공사시 분합문이 설치됩니다. 59타입 침실2 발코니의 경우 바닥 배수구 및 수전이 없으므로 물쓰는 공간이 아니며, 단열 및 바닥난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CG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대,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등), 욕실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져의 위치, 통합스위치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 전열교환기, 보일러 등은 실제 시공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탁기 크기로 인한 세탁실 출입 등)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환기구(DA),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등은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벽체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본공사 시 냉방전용(공기청정기능없음)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건조기는 전기식으로, 가스식 건조기 설치를 위한 연도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스식 설치 불가) ※ 건조기는 전시를 위한 것으로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된 가스 배관 위치는 본 공사 시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상부장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스마트홈 기능 홍보 및 구현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모형의 경관 조명 및 입출차 차단기는 연출된 것으로 실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류(시스템가구 포함)의 바디 및 도어 마감재는 본공사시 동등이상 제품이 설치될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은 매입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조명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 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이 설치 되었으며, 본공사시 현관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조명, 벽부선반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TV, 음향기기 등), 기타 전시용품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품목, 유상옵션 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유상옵션 품목 설치사항, 규격, 견본주택의 연출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좌우 대칭형 세대의 경우 옵션형태/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주동계획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 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 도서 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등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계법령에 따른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체결 이후에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 차선 **및 지하연결통로는**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가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계약전 현장을 확인하셔야 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남동측 공개공지와 함께 조성되는 폭4m의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의 보행자를 위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계획을 기준으로 하며, 삭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동측 공개공지와 함께 조성되는 폭4m의 공공보행통로는 외부인의 이용을 금지할 수 없으며,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레벨, 폭, 포장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단지 배치 및 동별,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일조량의 감소,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현상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재활용 분리수거공간, 음식물 쓰레기처리, 재활용 창고, 자전거 보관시설 등) 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 및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 배기휀**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배치 상 일부동의 저층세대 및 특정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101동 하부에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DA 등이 위치하여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 및 각 동의 저층부 인접세대는 필로티 등 공동개방공간을 사용하는 입주민에 의한 소음 및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서는 단지 내 야간조명 효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실외기실, 배기휀**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함(재활용 보관소 포함)은 1개소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치 및 개소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세대 위치 및 주동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이동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 필로티 및 저층 인접세대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시선간섭 등의 사생활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창호형태, 난간종류,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강기를 사용하여 이사하셔야 합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동별로 진입동선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전 단지 모형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시공시 및 소방준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의 보행시 경사도에 따라 보행의 지장과 미끄러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외부에 계획된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공간 및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부위에는 식재 및 차폐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내진 능력은 KDS 기준을 따라 "내진Ⅰ등급"입니다.
- 아파트를 포함한 본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 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동 표시, 동 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필로티 내부에는 석재, 석재뿜칠, 도장 등이 혼용되어 시공됩니다.
- 우편물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외벽부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주동 측벽 문양,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승강기 홀 공용부 창의 경우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공용부 창호의 제작사 및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의 높이와 형태는 고도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동 측벽 로고의 위치 및 개소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동 및 외부 시설의 외관/색채 등의 공용부 설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개인 취향에 따라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저층부(근린생활시설 및 기부채납시설) 경관조명 및 업무시설의 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에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옥상층에는 입주민 전용의 **흔들놀이대 및 휴게시설, 전기 및 기계 설비시설 등** 이 계획되며, 상층부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및 빛 산란에 의한 불편함 등의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비상차로의 폭, 경계석 위치, 형태, 회차동선, 회전반경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 (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으며, 보행공간에 인접한 경우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사이 지상층에 공개공지가 조성되며,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대지안의 공지 구간으로 외부인의 이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의 디자인, 식재 배치, 시설물, 포장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 형태, 색체, 마감, 규격,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조경시설은 공용시설로 개별세대가 점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의견에 따라 옥상층에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의 옥상조경이 설치되며,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목의 수종, 규격, 식재 위치는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 일조와 조망 간섭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차량 활동구역 및 에어매트 주변에는 소방구조활동을 위하여 수목 식재가 제한되며, 준공시 소방점검 의견에 따라 식재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면적, 시설물 및 포장의 형태, 색체, 마감, 패턴, 위치, 규격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의 설치 규모, 위치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공간에 우·오수를 위한 맨홀, 집수정, 받이, 트렌치 등이 설치되며,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규격, 형태,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공간에 조경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전이 설치될 수 있으며, 동파시 세대에 공급되는 수도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동파가 우려되는 환경에서는 사용 제한 및 드레인 작업 등의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 단지 내 놀이시설, 휴게시설, 관리시설, 옥상조경 등의 조경시설 인접세대에는 소음, 진동, 시야 간섭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민 개인의 취향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 설치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견본주택 내 모형을 통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볼라드등, 수목투사등, 조경시설내 조명 등 각종 옥외 경관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는 빛의 산란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경관조명의 위치, 사양 및 수량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인근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조경 수목, 시설물, 포장의 추가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견본주택내 모형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후 조경 수목, 시설물, 포장 등의 유지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민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수목 고사, 시설물 및 포장의 하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각종 조경시설을 이용 및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 관리, 보수 비용 일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옥외공간 이용 중 개인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며,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정화조는 인허가,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일부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덕트 및 환기시설이 해당동의 세대 인근 공용부PD 및 외벽, 옥상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계 후 유지관리 및 주기적인 청소는 관리 주체의 의무임에 따라 관리 소홀로 인한 기능상실, 냄새, 환경 민원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 및 지하연결통로는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연결통로는 인허가 조건 사항으로 설치된 것으로 인허가 관청 및 관련 주체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최종 유지관리 주체 등이 확정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비 등의 부담 주체가 최종 확정될 경우 그 결정에 따라 계약자(입주자) 부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우수저류조 등 업무시설 등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음을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PIT층에 제연휀이 설치됨에 따라, 인접세대 (지상3층 세대)에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층에 소화수조가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근 동(업무시설) 옥상층에 소화수조, 제연휀, 냉각탑 및 보일러(캐스케이드) 연도, 정화조 등의 환기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및 냄새 또는 환경 민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에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지역정압기 설치를 위한 부지 점용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계약자(입주자)께서는 해당 점용계약의 내용을 조건없이 승계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따라 지역정압기가 설치되어 소음 및 조망 등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A타입의 오픈발코니의 위치는 사용성 개선 및 시야 확보 등을 위하여 위치가 일부 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 본 단지는 아파트, 업무시설, 기부채납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시설로서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 2, 4, 5, 6층에 **290**대로 구성되며,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지하 2, 3층에 175대, 및 기부채납시설 주차장은 지하2층에 5대로 계획하였습니다.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지하4층 주차장에 설치(주거용 급속 2대, 완속 24대)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금형 콘센트가 설치되는 일부 주차면은 일반 주차면과 공용으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북동측에 에 위치하며, 해당 진출입구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기부채납시설과 같이 이용합니다. 이로 인해 인근 저층 세대는 진입램프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3층~지하 6층 주차장의 차로의 높이는 2.3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진출입이 불가하므로 견본주택에서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주차장에는 결로, 화재, 분진 등으로 인한 환기 및 예방의 목적으로 환기덕트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2층의 주차장 주출입구는 법적기준에 따라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하의 택배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지하3층 이하는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능 함을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배치 여건에 따라 일부 경우 주차 후 해당 동의 승강기 홀 접근의 이동거리가 멀거나 증가, 해당 동의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계약전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설계여건에 따라 주차장 내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 승하차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과 아파트 승강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지하출입구 편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대수 및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우수조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 및 장비의 가동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우기 등의 기상요건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바닥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 부위의 마감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차장 바닥마감은 설계에 배수 구배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 외벽과 주차구획의 이격으로 인해 일부 주차통로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천창)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정화조, 기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공용부 등에 설치되는 트렌치는 구배가 없이 시공되며 일부 부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을 실로 사용하거나 면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공동주택용(부대복리시설용 등 포함), 근린생활시설용의 각종 배선, 배관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저수조, 기계실 등 결로발생 확률이 높은 공간에 대해서는 추가 하자 방지를 위해 천장과 벽, 바닥의 도장 등 마감공사를 미시공 할수도 있습니다.
- 주차장 이용 시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해 주차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관련**

- 경로당,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시시설의 천장 높이는 설비자재와의 간섭 등으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기본 제공 품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공간만 제공되며, 집기, 비품, 운용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등은 입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용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변경이 있을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통신시설물, 놀이 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 시설, 수목 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 방지 열선 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 보수 ·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등)은 사업주체가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운용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가 직접 운용하여야 하며, 계약자(입주자)의 추가적인 요구에 의한 집기 및 비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지내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등)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 주차장 이용을 위해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 혹은 이용객의 단지 내 진입이 불가피하며, 향후 분쟁발생 시 입주민과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가 관리규약에 의해 분쟁사항을 조정해야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② 복리시설 :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GX룸), **작은도서관, 경로당, 맘스카페**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계획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 지상1층**~지하1층**
 - **주민운동시설 : 지하1층(피트니스 1개, GX룸 1개)**
 - **관리사무소 : 지상1층**
 - 펌프실, 저수조(아파트, 업무시설, 기부채납시설, 근린생활시설용) : **지하 2~6층**
 - 주차장 램프 : 단지 **북동**측
 - 경로당 : 지하1층
 - 주민운동시설 : 지하 1층
 - 흔들놀이대 및 휴게시설 : 옥상층
- 부대복리시설 중 관리사무소 및 방재실을 제외한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됩니다.
- 커뮤니티시설은 각 동 ELEV,계단실 및 지상1층의 계단,에스컬레이터 등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며, 102동은 동 ELEV,계단실 이용시 지하1층 상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진입을 위한 계단실 및 ELEV실에 인접한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모형 및 관련 분양자료들을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 업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미확정이며, 추후 개별 분양으로 운영되는 입점업종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주방 등의 시설이 입점하는 경우 배수구 연결 시 그리스트랩등을 설치(입주자 부담)하여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량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모형 및 관련 분양자료들을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 업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미확정이며, 추후 개별 분양으로 운영되는 입점업종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 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1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되며, 마감재의 품절, 품귀 시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각 실의 천정고,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기능,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내외부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

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설계상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시설별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해당 시설의 기타공용면적에 분배되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등)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한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본 시설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
- 입주자와 기부채납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는 지하층에만 가능하며, 인허가 협의를 통해 관청과 주거/비주거로 층별 구분을 통해 구분하도록 결정된 바,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는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비주거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기부채납시설)과 방재실을 1개소로 통합 운영하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 및 분리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세대평면, 가구 및 마감재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84B**타입은 건립세대인 **84A**타입과, 미건립세대인 **39**타입은 건립세대인 **59**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유사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추가선택품목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달로그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거실창의 고정창호는 소방관진입창으로 피난 등의 이유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창호 앞에 피난동선에 방해되는 물품을 적재하실 수 없습니다.
-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등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성능개선, 디자인개선, 단종 등), 특허권 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동급수준 또는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힌지, 레일, 가구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300**mm(침실 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의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축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 세대가 기본형(비확장) 세대인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사이즈가 상이합니다.
-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등의 천정에 별도의 마감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의 천장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세대 대비하여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 제공량이 상이하므로 카탈로그 상 이미지를 상세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설계 및 공간 특성상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를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4타입의 오픈발코니는 사용성 및 미관 개선 등의 이유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를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가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 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상/하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 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에도 천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합니다. 또한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 주십시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탈출형피난구,** 실외기실에 실외기 및 전열교환기, 보일러 외 피난 동선에 방해가 되는 다른 물품을 적재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증감시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개별 사용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다용도실 내 세탁기 설치공간은 가로 90cm, 세로 90cm 규격으로 확보하여 해당 규격 이하의 세탁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일부 타입의 경우 세탁기 설치시 세탁기 용량에 따라 다용도실 도어를 탈거해야 합니다. 다용도실 출입문 폭 90cm는 문틀 바 두께가 포함된 치수이며, 실제 안목치수는 창호 제조사의 사양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 설치공간 일부 타입의 경우 세탁기 설치시 세탁기 용량에 따라 도어를 탈거해야 합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친환경 스톤플로링,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루바닥재는 자재의 수급 시점에 따라 마루코어재(바디재)가 변경될 수 있으며, 패턴과 색상이 균일하지 않거나 표면텍스쳐, 폭, 두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바닥재는 타일나누기가 추가, 변경될 수 있으며, 패턴과 색상이 모델하우스와 상이할 수 있으며, 기본마루와 옵션바닥재 사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패턴과 색상이 균일하지 않거나 표면텍스쳐, 폭, 두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마루 및 옵션바닥재 사이에 재료분리대가 설치되며, 재료분리대의 재질, 형태 및 실리콘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리콘의 색상,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탁기 설치공간/실외기실/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허용범위 이내의 오차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공용)은 본공사 시 PVC계통(ABS 등) 도어로 시공됩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해당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복도 또는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세탁기 설치공간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타일의 메지 색상은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친환경 스톤플로링 자재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엔지니어드스톤의 제조사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욕실은 시스템욕실공법 적용예정으로 공장에서 생산된 타일벽판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조성됩니다. 벽판은 급수 및 배수 배관 등으로 인하여 배면에 유격공간이 존재하며 이로인해 두드릴경우 빈공간 소리가 날 수 있으나, 타일 배면은 고밀도 폴리우레아 재질로 전면 채워져 있으므로 하자가 아닙니다. 또한 배면 유격공간으로 인해 하중을 가하면 부분적으로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조 및 기능상 이상이 없습니다.
- 욕실 바닥(샤워부스 내부공간 및 욕조 제외)은 바닥난방적용, 슬리퍼 없는 무턱구간 컨셉으로 물넘침 방지용 최소 단차로 시공되므로 슬리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마루자재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등 타일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견본주택과 동일한 패턴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과 인조대리석 등은 자재특성상 본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본공사시 패턴 및 색상 등이 견본주택 설치세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석재류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공사 시 나눔부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타일 및 석재류 자재특성에 의한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줄눈마감, 평활도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마감재(친환경 스톤플로링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 무관합니다.
- 세대 내 바닥재인 마루바닥재의 구성 부재 중 심재(코어)의 재료는 내수합판 또는 고밀도 섬유판이 사용됩니다.
- 본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시공 여건에 따라 우물천장 높이 및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코킹 두께 및 색상등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탈출형피난구,**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커튼박스 길이는 천장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사 시 욕실 천정에 급수급탕분배기와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금속도어(현관 방화문) 및 목창호, PL창호의 문짝,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시스템 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며, 냉장고 뒤쪽 벽체는 벽지로 마감됩니다.
- 각 단위세대 내부에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 목문 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시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현관 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타입에 따라 침실 창호 크기가 다르게 설계 되었습니다.
- 주방 상판 싱크대 하부에 설치되는 물끊기 홈은 본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길이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창호 관련

- 외부 창호의 프레임, 색상, 형태, 개구부의 크기, 하드웨어, 유리 사양 등은 성능개선, 안정성 검토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및 제조사는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 방향, 색상,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프레임 접합 등에 따라 실내에서 프레임 사이에 줄눈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방화문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측 창호에 방충망이 설치되며, 내측(분합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84A타입 거실** 외부창호는 **오픈발코니** 유무에 따라 미서기이중창 혹은 **유리난간이중창**으로 설치되며, 형태, 색상, 높이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거실은 유리 난간 일체형 창호가 설치되며, 형태, 색상, 높이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분의 외부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출입문(터닝도어) 문짝은 제조사의 단열 및 기밀성능 만족여부에 따라 내부 마감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은 **무전원타입 자동루버**로 설치되며, 형태 및 사양, 색상, 작동방식 등은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기계,전기,통신 설비 관련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 의거 단지 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 해당사항없음
 - 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지상층**(지상10층 EPS/TPS)** / 지하층**(지하1층 EPS/TPS)**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CCTV는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수량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CTV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방범과 안전, 편의성을 위해 설치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에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지상 개폐기, 패드, 전주, 변압기, 맨홀 등)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맨홀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특정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침해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고, 시설물의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일부 동 및 일부 층은 주동 측벽에 낙뢰 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치 등을 확인하여 주시고,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지상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인접한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임의 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 비용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따릅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 시, 이사 세대의 전용 이용 또는 일부 시간대 혼잡으로 인하여, 대기시간 지연 및 사용 불가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준공 전 일정 기간 동안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인수인계 후 운행으로 인한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 인승, 설치 수량 등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차 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인허가 내용과 다르게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동 등의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우수조/정화조 등이 설치되어 장비의 정기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배연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에 초래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 등의 D.A, 부대시설의 실외기 시설,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 등에 의해 일부 특정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및 환경권 침해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내에 전기차충전설비가 계획되어 있으나 인허가 사항이나 주차장의 구조 등에 따라 위치 등이 계획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전기차충전설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차 대수에 전기차충전구획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주차면은 실제 주차 용도에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시설물(전기차충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경관조명, 옥외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 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 시설, 수목 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 방지열선 시설, 제습장치, 냉난방기,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동 상부(옥상, 외벽 등)는 의장용 구조물, 경관조명, 설비 통기 배관, 발전기 연도, 위성 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 피뢰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조망 간섭, 야간조명의 영향, 눈부심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해 일부 특정 세대는 침해를 받아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으며, 설치 용량 및 수신 감도 등에 따라 위치, 개소 및 수량이 변경되는 사항에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동 상부 옥탑구조물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계획되어 있으나, 에너지관련 검토에 따라 본 공사시 설치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상부는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의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무인택배함 설치 위치 및 수량은 인허가 내용 및 시공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무인택배함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도 등의 천장 내부 공간이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부대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실내 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기계,전기,통신 설비 관련**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시공되며, 개별적인 위치 변경 요청은 불가합니다.
- 세대 분전반(「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설치)과 세대 통신 단자함(「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별표 3의 주) 3」에 의거 세대단자함은 주변의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의해 운영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침수 및 결로 발생의 우려가 없는 노출된 장소(신발장, 세탁실, 베란다, 발코니 이외의 장소)에 설치)은 견본주택에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세대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거실 벽면에 벽걸이 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 안내서의 유의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 세대 거실과 각 침실에 설치되는 통합스위치는 조명기구 점등과 소등, 대기전력 차단, 난방 온도조절의 기능이 통합된 제품으로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전기 마감재(세대 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 월패드, 조명기구, 배선기구, 콘센트, 통합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수량 및 사양은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하는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이용하여 방문자 확인, 가스밸브제어, 일괄소등제어, 엘리베이터 호출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touchHL) 이용에 따른 비용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사용검사(승인)일 또는 준공인가월(임시사용승인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 등 조건부 준공일 포함)을 기준으로 24개월(2년)이 지난날부터 유료로 전환되며, 이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생하는 클라우드 유지/보수 용역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각 해당 단지 관리주체와 유료전환에 대한 사전고지 및 협의(관리비 포함 청구 또는 별도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시 서비스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touchHL) 제공에 따라 해당 단지는 홈네트워크 제조사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지 않으며, 추후 이용 요청 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시에만 안방 발코니에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며,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조명기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단종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형태 및 모양 포함)
- 일반가구, 주방가구, 시스템가구 등에 설치되는 인테리어조명은 일괄소등이 불가능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선택품목에 따라 세대 분전반의 전원 구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하며,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 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수량,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급수,급탕 분배기는 보일러 하부에 설치되며, 유지관리를 위해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 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 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배수구, 수전 및 액세서리류 등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연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9타입, 59타입은 세대 보일러가 각각 실외기실, 침실1 발코니에 설치되어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 및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선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비용은 입주 후 관리비 등에 포함되어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 및 입주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9타입 가스 입상배관(공용배관)은 실외기실 내부에 설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9, 59타입 실외기실에는 보일러 유지관리를 위한 바닥배수구(59타입은 입상배관 포함)가 설치되며, 별도 수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배수 입상배관은 침실2 발코니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는 실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세부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건립 타입의 경우에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되는 실과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 바닥난방이 설치됩니다 (단 ,욕조, 양변기, 세면대 부위 및 샤워부스 내부는 제외)
- 84A, 84B타입 다용도실에 세탁단차 아래구간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됩니다. (단, 39타입, 59타입 다용도실 또는 세탁기 설치구간에는 난방 미설치)
- 가스배관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쿡탑 옵션 선택시에도, 주방에 가스배관은 설치됩니다 (단, 주방상판에 가스호스 관통용 홀은 타공되지 않음)

- 싱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설비기기(온수분배기 등)가 설치됨에 따라 견본주택 사양과 내부 폭 가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며 레인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는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차제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관계법령 준수로 인한 배관 및 스프링클러 헤드가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관계법령 준수로 인한 배관 및 스프링클러 헤드가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배관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침실1 발코니 등은 비난방구간으로 설치되는 수전 및 배관, 스프링클러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 59타입의 다용도실에는 청소용 스프레이건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오픈발코니 등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오픈발코니에는 우수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당해층에서 발코니 외부로 방류됩니다. 단, 발코니에 빗물이 정체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 오픈발코니에는 조명 및 배선기구, 소방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세탁실 포함) 수전 및 바닥배수구는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세부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환기장치의 환기덕트 및 주방,욕실 배기덕트 내부에 실내.외 온도차에 인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환기 설비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실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설비가 **다용도실 및 거실** 천장 상부에 설치 될 예정(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이며, 이는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등이 다소 발생됩니다.
- 39, 59타입의 세대 환기장치(전열교환기)는 거실 천장면에 설치되며, 84타입의 세대 환기장치(전열교환기) 및 덕트는 다용도실 천장에 노출 설치되므로 미관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주방 배기 및 욕실 배기는 당해층 직배기로 설치되며, 주위 환경여건에 따라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으며 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욕실 배기는 거실, 침실 등을 경유하며 외벽에 배기구가 설치되므로 이에 따른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세대환기 덕트, 주방 및 욕실 직배기 덕트가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타입은 욕실 직배기에 따른 덕트 및 배기구가 침실구간에 설치됨에 따라 커튼박스의 깊이나 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 및 덕트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깊이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에어컨 매립배관은 침실1(벽걸이 에어컨용), 거실(스탠드 에어컨용) 2개소에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에는 제외됩니다.
- 실외기는 1대 설치만 가능(차단기 1개설치)하므로,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경우 기본 제공되는 전기용량 내에서 실외기 교체가 필요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은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드레인배관은 실외기실 또는 세탁실에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라인은 본 공사시 관청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 간 벽의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결로방지를 위해서 해당세대 천장 속에 단열재가 시공되며, 단열 두께에 따른 발코니 부분의 천장 층고가 낮아질 수 있으며, 거실 등 박스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 후 천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위치에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단, 옵션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을 선택시, 설치구간은 천장마감이 낮아지며 에어컨이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우·오수 드레인 및 선홈통 등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계약자는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환기 부주의로 인한 결로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를 임의로 개별 변경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을 야기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자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지정일 만료일 이후 일정기간은 관리비 등이 다소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변경 등 관련 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누수, 결로, 배관공사 등의 하자처리는 입주자 책임으로서 개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 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 설계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창호 공사, 발코니 확장 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위치 등의 설치 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설비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미만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학교 배치등 관련분야 유의사항

• 본 사업장의 초등학교 배정은 덕수초등학교, 창덕여중(중부4학교군) 및 중부2학교군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중·고 배정 안내: 홈페이지 [학구도안내서비스(https://schoolzone.emac.kr/)]
• 교육시설 등은 향후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통학구역 및 학교군 내 공동주택 개발계획의 변경(공급면적, 세대수, 입주시기, 분양방법 등) 및 새로운 개발계획 승인·시행 등 학생배치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생배치계획 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학생수,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임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계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주차장 차로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5m	지하2층 2.7m/기타층 2.3m	2.7m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포함)

구분	건축, 기계,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구조
회사명	㈜씨엠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동호이엔씨	㈜해치에프엔씨	㈜센구조연구소
감리금액	1,650,000,000.-	518,700,000.-	378,000,000.-	40,000,000.-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서 기간
제01282026-104-0001100호	**₩214,488,995,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③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본 아파트 사업장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결제관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분양대금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또는 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또는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에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관리형토지신탁 특약사항

※ 본 사항은 본 분양광고 여타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① 본 공급물건은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지엘돈의문디앤씨㈜,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및 시공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본 특약사항에서 신탁계약이라 함)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하고 분양계약(공급계약)의 체결로써 다음 사항 전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② **본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인 지엘돈의문디앤씨㈜가 부담한다.**

③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바,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부해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등의 사유로 **신탁이 종료 또는 해제, 해지되는 경우, 분양계약(공급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본 사업상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자의 모든 행위 및 권리와 의무는 시행위탁자인 지엘돈의문디앤씨㈜에게 별도의 조치 없이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④ 시행위탁자의 신탁계약 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위탁자 지위 양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시공사인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교체(건축물 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시 수분양자는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시공사는 도급공사계약범위와 시공상 하자에 한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

⑥ 신탁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입금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근거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⑦ 본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중도금대출 알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분양계약자는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⑧ 본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⑨ 공급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내·외장 자재의 수급여건, 현장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자에게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관련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⑩ **분양계약(공급계약) 목적물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신탁계약이 정한 업무범위 내 및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기타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지엘돈의문디앤씨㈜에게 있다.**

⑪ 본 특약사항은 본 모집공고상 다른 모든 내용에 우선하며,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3. 24.>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축공사	인증번호	G-SEED-P-2026-0636-9
건 축 주	지엘토어문디앤씨㈜	인증기관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준공(예정)일	2030년 6월 28일	유효기간	2026. 06. 23.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28번지 일원		
층 수	지하 6층, 지상 21층		
연 면 적	69,909.80㎡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설 계 자	㈜기안건축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우수(그린2등급)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복합건축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5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우수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 ★ ☆

2026년 6월 23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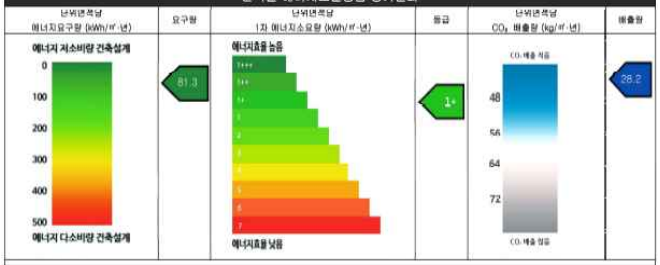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축공사(주거)	인증번호	26-주-예-14-0081
준공연도	20300628	평가자	차성준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28번지 일원	인증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층 수	지하 6층 / 지상 21층(29개동)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69909.8000(㎡)	유효기간	사용검사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기안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인증등급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3.6	80.5	60.9	16.6
급탕	30.7	34.6	25.5	7.0
조명	7.0	4.9	13.4	2.3
환기		5.0	13.7	2.3
합계	81.3	125.0	113.5	28.2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임 ().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 년 08 월 15 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시행수탁자)	시행위탁사	시공사
상호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지엘돈의문디앤씨 주식회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대치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96, 2912호 (논현동, 푸르지오시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신천동)
법인번호	110111-7125720	110111-2922064	110111-0274699

■ 홈페이지 주소(사이버견본주택) : https://brand.hldni.com/gyeonghuigung/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23-6

■ 분양문의 : 02-303-2280

■ 본 모집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급(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 및 공급(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